

영암군 5차 재난생활비 지급 공고

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우리지역에 주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든 군민에게 『영암군 5차 재난생활비』를 지급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4월 5일

영 암 군 수

1. 지급개요

- **관련근거** : 『영암군 긴급재난생활안정 지원 조례』
- **지급대상** : 아래 요건을 충족한 영암군 모든 군민
 - 1) **지급기준일(22. 4. 4.)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** 영암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군민
 - 2) 「출입국관리법」 제10조에 따른 **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자(F5)**
 - 3) 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**결혼 이민자(F6)**
 - ※ 단, 기준일 후 사망자, 전출자 또는 기준일 후 전입자 지급 제외
- **지급내용** : 1인당 20만원(세대별 일괄 지급)
- **지급방법** : 영암사랑상품권 / 영암사랑카드 충전
 - ※ 재난생활비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급적 연내까지 사용할 것을 권장
- **신청자** : 세대별 세대주(동거인은 별도 세대 인정)
 - ※ 혼잡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대를 대표하는 자(1인)만 방문할 것을 권장
- **신청기간** : 2022. 4. 8.(금) ~ 5. 6.(금)
- **신청방법** :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/ 마을별 찾아가는 신청(면 단위)
 - ※ 읍면 자체계획에 의거 신청·접수·지급방법 등 안내예정
 - ※ 상호읍은 상호읍행정복지센터, 서부출장소(삼포리·용당리)에서 신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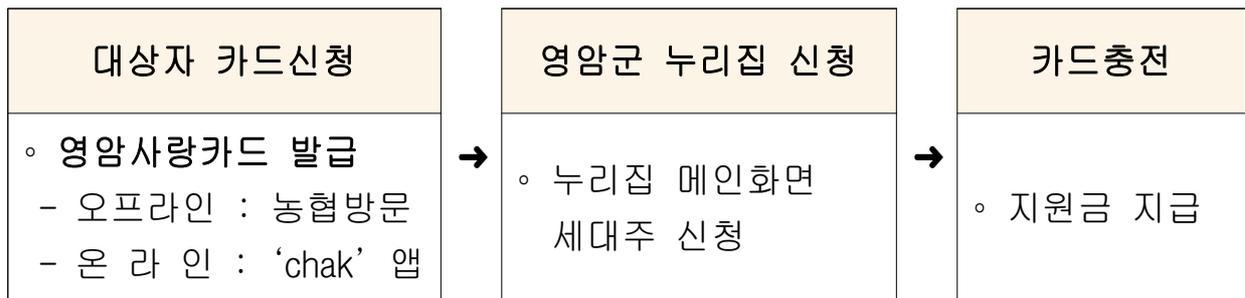
① 영암사랑상품권 신청·지급

영암읍, 삼호읍	읍사무소 방문 신청·지급	4.8.(금) ~ 5.6.(금) / 4주간 ※ 마을별 신청일 운영 : 4.8.(금) ~ 4.19.(화)
덕진·금정·신북 시종·도포·군서 서호·학산·미암면	마을별 찾아가는 신청·지급	4.8.(금) ~ 4.15.(금) / 1주간 ※ 신분증 지참, 세대주 본인만 가능
	면사무소 방문 신청·지급	4.18.(월) ~ 5.6.(금) / 3주간 ※ 신분증, 위임증빙서류 지참

※ 면 단위는 마을별 찾아가는 신청기간(4.8 ~ 4.15)에는 면 방문신청 불가.

② 영암사랑카드 충전 신청·지급(영암사랑카드 발급자 또는 소지자만 가능)

영암군 누리집 온라인 신청 (https://www.yeongam.go.kr)	4.25.(월) ~ 5.6.(금) / 2주간
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



○ 구비서류

- 본인(세대주)신청 : 신청서, 세대주 신분증
 - 대리(세대주 이외) 신청 : 신청서, 위임장, 신분증(세대주, 대리인)
 - 외국인 신청 : 신청서, 신분증(영주증, 외국인등록증 등)
- ※ 동일 세대가 아닌 배우자, 직계존비속, 형제자매는 '가족관계증명서' 제출
- ※ 대리인 범위 : 세대주(동거인), 세대원, 세대주의 배우자, 직계존비속 등
가족관계증명서상 증명 가능한 자
- ※ 외국인의 경우, 본인이 직접 신청함이 원칙이나,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
신청하고자 하는 경우, '가족관계증명서' 추가 제출

2. 신청요건

- 신청자 : 세대별 세대주(동거인은 별도 세대 인정), 외국인
- 대리신청
 - 세대주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방문이 불가할 경우
 - 대리인 신청 가능 (위임장, 세대주 신분증, 대리인 신분증 지참)
 - 동거인 : 별도 세대 인정, 1인세대로 신청 가능
 - 부득이한 경우, 동거인의 위임을 받아 세대주, 대리인 신청 가능 (동거인 신분증, 대리인 신분증, 위임장 지참)
 - 외국인 : 본인 직접 신청이 원칙
 - 부득이한 경우, 배우자 등 가족관계증명서상 증명 가능한 자에 한하여 대리 신청 가능(위임장, 외국인등록증, 대리인신분증 지참)
- 기준일 이후 출생자는 신청기간 내 출생신고를 한 경우 지급 가능
- 기준일 이후 사망자는 지급 불가
- 기준일 이후 관외전출자, 관외전입자는 지급 불가
 - ※ 기준일 당시 관내에 거주하다 관내로 전입하는 경우, 지급 가능
 - ⇒ 신청 시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신청

3. 이의신청

- 신청기간 : 2022. 4. 8.(금) ~ 5. 6.(금)
- 신청장소 : 주소지 읍면사무소
- 신청내용 : 세대원 수 산정, 세대원 분할 지급, 지급대상자 추가 등
 - ※ 세대원 분할 지급은 이혼 소송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세대원이 재난생활비를 함께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(증빙 서류 제출)

4. 문의처

- 신청 안내문 참조

코로나19 국민 일상회복을 위한 영암군 5차 재난생활비 신청안내



지급대상 지급기준일('22.4.4.)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,
영암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
(외국인 영주권자(F5), 결혼이민자(F6) 포함)

지급액 1인당 **20만원**

신청방법 세대별 세대주 신청 (동거인은 별도세대 인정)

신청일정

① 영암사랑상품권 신청·지급

영암읍, 삼호읍	읍사무소 방문 신청·지급	4. 8.(금) ~ 5. 6.(금) / 4주간 ※ 신분증, 위임증빙서류 지참 마을별 신청일 운영 : 4.8.(금) ~ 4.19.(화)
덕진·금정·신복 시종·도포·군서 서호·학산·미암면	마을별 찾아가는 신청·지급	4. 8.(금) ~ 4.15.(금) / 1주간 ※ 신분증 지참, 세대주 본인만 가능
	면사무소 방문 신청·지급	4. 18.(월) ~ 5. 6.(금) / 3주간 ※ 신분증, 위임증빙서류 지참

② 영암사랑카드 충전 신청·지급(영암사랑카드 발급자 또는 소지자만 가능)

영암군 누리집 온라인 신청
(<https://www.yeongam.go.kr>)

4. 25.(월) ~ 5. 6.(금) / 2주간

마을별 신청일 운영기간이 읍면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 후 방문

읍면	전화번호	비고	읍면	전화번호	비고
영암읍	470-6033	총무팀	시종면	470-6252	총무팀
삼호읍	470-6072	총무팀	도포면	470-6292	총무팀
삼호읍 서부출장소	470-6122	서부출장소(삼포·용당리)	군서면	470-6333	총무팀
덕진면	470-6133	총무팀	서호면	470-6371	총무팀
금정면	470-6174	총무팀	학산면	470-6412	총무팀
신복면	470-6213	총무팀	미암면	470-6452	총무팀

기타문의 영암군청 총무과 교류후생복지팀 (☎ 061-470-2511)